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8. 18 선고 2021나105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8. 18 선고 2021나10565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 15 선고 2017가합1002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호창, 공익법무관 유민환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문

변론 종결 2022. 7. 7.

판결 선고 2022. 8. 18.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 15. 선고 2017가합1002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15. 4. 21. 별지 목록 제4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 1)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107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2)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10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3)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107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4)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107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5)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107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6)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107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7)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107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8)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107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9)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107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10)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107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11)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107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12)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107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4행부터 표 아래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D의 소극재산

가) 이 사건 제1계약 당시 D의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308,021,262원	186,580,092원	494,601,354원
2	G	301,791,780원		
3	C	71,469,178원		
4	C	452,682,280원		
5	창녕군	256,476,910원		
6	한국주택금융공사	1,396,932,948원		
7	AQ	47,500,000원		

1	원고	308,021,262원	186,580,092원	494,601,354원
8	AR	11,000,000원		
9	AS	985,000,000원	816,065,753원1) 985,000,000원× 연 20% × 4년 52일(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1. 3. 1.부터 이 사건 제1계약일인 2015. 4. 21.까지)	1,801,065,753원
10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2)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가 2007. 2. 12.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채권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합계	4,833,520,20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4, 15, 21, 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녕군, 한국주택금융공사, AS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8쪽 표 아래 제6행, 제9쪽 제6행 및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4행부터 제10쪽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창녕군에 대한 채무(소극재산 순번 5)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창녕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창녕군수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AV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D에 대한 체납지방세채권 330,488,020원(=
289,409,030원 + 41,078,990원)을 신고하여 2009. 2. 18. 18,552,570원(= 14,347,150원 +
4,205,420원)을 배당받은 사실, 창녕군수가 2011. 2. 24. 및 2015. 2. 27. D의 체납지방세
256,476,910원을 결손처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30조의 2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위 개정으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는바, 창녕군수가 위와 같은 법률 개정 이후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D의 체납지방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위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데,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압류가 해제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그리고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15, 제5호증의 1 내지 8, 15,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녕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채무는 창녕군수가 2005. 5. 7.부터 2021. 7. 6.까지 D에 부과한 지방세인 사실, 창녕군이 2006. 10. 12. 이 사건 제1 내지 8, 15 부동산 및 앞서 본 적극재산 순번 16, 17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각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제1 내지 8, 15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압류등기가 2007. 2. 7. 그에 선행하여 마쳐진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따라 직권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5. 6. 22. 위 본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말소됨에 따라 위 각 압류등기에 관한 회복등기가 마쳐진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창녕군의 D에 대한 지방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로써 중단되어 현재까지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위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이 위 지방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이후 압류등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한 위 채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던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극재산 순번 16, 17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2. 마쳐진 압류등기는 이 사건 제1 내지 8, 15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등기와 달리 말소된 적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각 압류에 의하여 현재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고, 그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채무(소극재산 순번 6)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1호증의 1, 2,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 2006카단25706호로 채무자 D, 청구금액 1,396,932,948원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06. 12. 26. 이 사건 제3부동산 및 앞서 본 적극재산 순번 16, 17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2020. 10. 14.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2020. 10. 8.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의 존재를 다투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적극재산 순번 16, 17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는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으로 인하여 권리관계가 불투명하여 구상 실익이 없어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D에 대한 채권 중 일부가 2022. 3. 15. 시효로 소멸하여 2022. 4. 29. 기준 잔존 채권액은 원금 161,600,132원, 손해금 339,760,344원, 대지급금 2,068,053원, 기타미수금(추가보증료 등) 3,601,320원 합계 507,029,849원이라고 회신하여 D에 대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2022. 3. 15.에야 그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계약 당시 한국금융주택공사는 D에 대하여 위 가압류결정상의 청구금액과 같이 1,396,932,94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AQ, AR, AS에 대한 채무(소극재산 순번 7, 8, 9)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1호증의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AS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AQ는 창원지방법원 2006카단6632호로 채무자 D, 청구금액 47,500,000원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06. 8. 31. 적극재산 순번 19, 20, 2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AR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3카단8339호로 채무자 D, 청구금액 11,000,000원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적극재산 순번 20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AS은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차426호로 2007. 3. 29.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9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D에 2011. 2. 28. 송달되고, 2011. 3. 1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계약 당시 D가 AQ, AR, AR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AS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채권이 현재 시효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AS의 D에 대한 채권은 지급명령 확정일인 2011. 3. 1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1. 3. 15.에야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산정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계약 당시에는 D가 AS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위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4행부터 제16쪽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위 아파트는 이 사건 변론종결 시 D의 적극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위 아파트의 가액은 합계 1억 5,800만 원(= 53,000,000원 + 54,000,000원 + 13,000,000원)이다.

또한,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2계약을 취소하고,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제1심 공동피고 B이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2021. 11. 2. 항소취하간주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 역시 이 사건 변론종결 시 D의 적극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위 각 부동산 가액은 합계 263,400,000원(= 86,600,000원 + 88,400,000원 + 88,400,000원)이다.

그러나 위 아파트와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421,400,000원(= 158,000,000원 + 263,400,000원)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7. 7. 기준 원고의 채권액 716,719,061원(원금 308,021,262원 + 지연손해금 408,697,799원3))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9행의 "창녕군, 한국주택금융공사,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 AS"을

"창녕군,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로 고쳐 쓴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최승원

판사박성준

판사조미화

별지

1) 985,000,000원× 연 20% × 4년 52일(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1. 3. 1.부터 이 사건 제1계약일인 2015. 4. 21.까지)

2)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가 2007. 2. 12.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채권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308,021,262원 × 연 10% × 13년 98일(2009. 4. 1.부터 2022. 7. 7.까지), 원 미만 버림